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정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3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유정인 의원(1명)

찬 성 자: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임규호,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지자체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책무, 기부의 날·기부주간 규정 등이 신설된 바, 주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예우 원칙과 철회 기준을 마련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익과 공공의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예우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국가·지자체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책무, 기부의 날·기부주간 규정 등이 신설되어 주요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의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예우원칙과 철회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